

## 요약

사례명	<b>망치</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361 (2023.06.21.)
사실관계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만든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헤드를 다듬고 플라스틱 캡 및 목재 손잡이와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li><li>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li></ul>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sup>6)</sup>

### 사례명 [망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361 (2023.06.21.)

#### 사실관계

요청자 Shanghai Thor Industrial Co., Ltd.

제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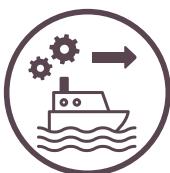
- Husky 12-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 Husky 24-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 제품

구성 

- 탄소강 헤드
- 목재 손잡이
- 플라스틱 캡

#### 제조공정



01

베트남에서 헤드 제조 및  
중국으로 수출



02

중국에서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1. 베트남 제조 공정

- 탄소강을 금형에 넣어 망치 헤드 형태로 압착
- 헤드에 손잡이 장착용 구멍 천공

##### 2.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

##### 3. 중국 제조 공정

- 헤드에 디버링, 챔퍼링, 연마 작업 수행
- 부식 방지를 위해 헤드에 코팅 작업 수행
- 사출 성형으로 플라스틱 캡 제조 및 헤드 부분에 영구적으로 접착
- 완성된 헤드에 제품 정보 인쇄
- 헤드와 목재 손잡이 결합

##### 4. 완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6)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인 망치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 II 시사점

- 공구 등의 실질적 변형 판정과 관련하여, 최종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주요 작업 부위가 타국에서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로 제작되고, 이를 수입하여 연마, 코팅, 기타 부분품 조립 등의 단순한 작업만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361 (2023.06.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336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